# **2017년 중국의 외상투자유치정책 전망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6년 12월 7일 중국의 발전과 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고 약칭합니다)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수정안(이하 “목록”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포하고 2017년 1월 6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제159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외개방과 외자의 적극적 이용을 확대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이하 “통지”라고 약칭합니다)를 통과시켰고 2017년 1월 6일에 거행된 정책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 목록에 대한 금번 수정은 목록에 대한 제7차 수정으로 이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외상투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방정책과 그러한 개방정책을 대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따라 목록의 기본적인 편제를 변경한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를 통해 중국은 2016년 현재 외상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외상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반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목록과 통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2017년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의 기본 방향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제7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2. **목록 개정의 배경과 의미**

이번 목록은 중국의 외상투자법제의 일련의 변화의 한 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13년 상해 자유무역지구에서 이미 외상투자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5년 1월에는 그간의 3자기업법을 대체하는 외국투자법 초안이 반포되면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법제의 기본틀의 변화를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업종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대해서 기존의 허가제도가 등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금지류, 제한류와 지분소유, 대표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장려류의 투자항목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편제한다는 방침이 이미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7차 개정을 통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반영된 새로운 목록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상투자의 그간의 구체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  |
| --- | --- | --- |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외상투자에 대한 허가제도 | 설립과 변경에 관한 등록제도 | 2016년 10월 실시 |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네거티브 시스템을 반영한 개정한 반포 | 2017년 1월 6일까지 의견 수렴기간 |
| 3자기업법 | 외국투자법 | 2017년 반포 및 시행 가능성이 높음 |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연동된 새로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터잡은 외국투자법의 제정과 시행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고 2017년에는 최근의 이러한 외상투자 법제의 변화를 집대성한 외국투자법이 본격적으로 반포 및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7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2. **외국인투자 제한항목 축소**

2015년도 목록 중에서 93개의 제한항목(여기에는 장려류 중에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19개 항목, 제한류 38개 항목, 금지류 36개 항목)을 62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공공도로여객운수, 화물에 대한 검수, 신용조사와 평가 서비스 영역이 개방되었고, 제조업 분야는 궤도교통설비, 자동차 전지와 신에너지 자동차 전지, 오토바이, 식용유지, 옥수수 심도가공, 연료 에탄올 등의 생산제조, 채광업은 귀금속, 리튬광 등 영역의 외자의 진입 제한이 개방되었습니다.

1. **목록의 편제의 조정**

발개위, 상무부의 2016년 제22호 공고와 결합하여 목록은 장려류 중에서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산업과 제한류, 금지류 산업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통일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외상산업투자지도목록은 이제 장려류와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두 가지 큰 부분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1. **내외자일치 원칙에 따른 관리**

원래 제한류에 속했던 대형 테마파크의 건설, 경영, 소형 전기 그리드 범위내에 단기 용량 3만 와트와 그 이하의 석탄응고가스 화력발전소, 단기용량 1만와트와 그 이하의 선탄응고가스 배출가스 양용 열전기 연산 전기발전소의 건설, 경영, 원래 금지류에 포함되었던 야생약재자원보호관리조례(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와 중국희귀멸종위기보호식물목록(中国稀有濒危保护植物名录)중의 약재가공, 상아조각, 호랑이뼈 가공, 대형 전기 그리드 범위내의 단기 용량 3만와트와 그 이하의 석탄 응고가스 화력발전소, 단기용량 2만 와트와 그 이하의 단기용량 1만와트와 그 이하의 선탄응고가스 배출가스 양용 열전기 연산 전기발전소의 건설, 경영, 군사, 경찰, 정치와 당교등 특수영역의 교육기구, 골프장, 별장 건설, 군사시설안전과 사용효능에 위해가 되는 프로젝트, 도박, 복권업(도박류의 경마장 포함), 음란업 등의 11개 항목은 내외자 일치 원칙에 근거하여 원래 모두 금지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목록에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1. **장려류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

이번 목록은 개방의 확대, 구조조정이 수정안의 주된 목적이고 장려류의 항목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향후 현대농업, 선진제조, 하이테크 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현대 서비스업 영역에서는 전통적 산업의 구조 업그레이드와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타 내용**
2. 국외투자자는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농민특별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의 구성원으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3. 국외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금지류 항목에 종사하지 못하고 제한류에 외자의 지분비율에 관한 조건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상투자 파트너 기업（外商投资合伙企业）을 설립하지 못합니다.
4. **대외개방 외자의 적극적 이용을 확대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
5. **2016년 중국외자이용 현황과 정책기조**
6. **2016년 중국외자이용의 기본현황—외상투자의 질적 변화**

2016년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불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욕구가 강하지 않았고, UN의 관련보고에서는 2016년의 cross-border 직접투자가 15-2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의 외자이용 전체규모는 2015년 수준을 유지하여 2016년의 지난 11개월 동안의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7,318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3.9%성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에는 은행, 증권, 보험영역에서의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6년의 외자이용금액이 2015년 수준을 유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구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비스업 분야를 보면, 외자유입액이 8%증가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외자도입량 비율 중에 70.1%를 차지합니다. 부동산 부분에 유입된 외자는 작년 11개월 동안 31.1%하락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4%에 그쳤습니다. 제조업 전체의 외자도입량은 하락하였으나 제조업 중에서 하이테크 제조업의 외자도입량은 3.6%가 증가하였고 노동집약적인 일반 제조업의 외자도입량은 급격히 하락하여 방직의료업의 경우는 32.6%가 하락하였습니다.

1.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에 대한 정책기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임과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외자가 중국 경제 발전에 대체불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효과적인 조치들을 연구하고 외자유치의 강도를 높히고 외자이용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2015년의 중공중앙 국무원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에서도 외자의 이용을 한층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영업 비즈니스환경 건설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1. **통지의 주요내용**
2. **외국인투자 제한항목 축소**

통지는 금번 제7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서비스, 제조업, 채광업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제조 2025”전략의 정책과 조치들을 내외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하여 하이테크 제조업, 스마트제조, 그린제조, 전통산업의 개조 업그레이드 등의 영역에 외상투자를 장려하고 외자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특허경영방식으로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R&D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내자기업, 과학연구기구와 R&D합작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의 중국에서의 창업 발전을 지원하고 그를 위하여 출입국 관리 방면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며 자본, 아이디어, 기술유치를 결합하여 더 좋은 창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1. **내외자 기업의 평등한 경쟁을 위한 새로운 조치**

통지는 각 지역, 각 부서에서 정책 법규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임의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고, 내외자 기업이 평등하게 중국 표준화 작업과 정부 구매, 경매,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법률 법규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자기업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의 대외 합작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하며 외상투자기업이 파이낸싱 채널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며 내외자기업에 동일한 등록자본금제도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구 확대**

2016년 9월 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상투자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을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전의 외자의 경우는 장려류이든, 제한류이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건별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률은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외상투자기업은 이를 등록만 하면 되게 제한이 훨씬 완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외자에 대한 개방정도가 높아졌고 중국의 외자관련 정책도 점점더 안정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기업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는 외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외상투자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커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방면에서의 보호 정도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 향후 요녕성등의 7개성에 새로운 자유무역구 시범지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통지는 금융영역에서의 대외개방 확대 의지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방방안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관련 부분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이를 반포할 예정인데 다만 이러한 일련의 개방 정책은 우선 자유무역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에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새로운 시기의 외자유치를 위한 주요 조치들**

첫째. 개방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제조업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폭이 넓었고, 서비스업의 개방폭은 적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의 폭을 더 넓히기로 해서 통지 내에는 모두 14개 영역에서의 개방의 정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 은행류의 금융기구,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전신, 인터넷, 문화교육, 교통 등의 영역의 개방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에서는 통지는 궤도교통, 오토바이 제조 등에서 외자의 진입 제한을 폐지하였고, 채광업에서는 혈암류(shale oil), 오일샌드 등의 비전통 석유자원(Unconventional Petroleum)에 대한 외자진입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한층더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는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공평한 대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로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의 우대정책의 폐지를 통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셋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중국의 자체적인 평가에 의하면 투자환경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이 자신의 모국모다 중국에서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14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영역이 모두 걸쳐 있습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글로벌 또는 블록별 경제합작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중국을 자유무역지역의 중심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개방과 국가안전보호의 조화 및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 이익의 보호**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면서도 계속 국가안전, 리스크의 관리 측면도 강조하면서외상투자의 개방과 국가안전 간의 중간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산업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유무역지구에서 시험실시를 해보고 결과가 좋고 진입을 개방하여 시장주체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제 발전의 힘을 보탤 수 있고 동시에 수반되는 일정한 리스크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만일 개방한 산업이 리스크가 비교적 크고 이러한 리스크가 쉽게 통제할 수 없으며 개방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개방여부를 확정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외자이용에 대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는 중국이 외자를 이용하는 정책 불변,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보장 불변,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 번성하는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방향의 불변을 말한 바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에서의 합법적인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데 이는 중국투자, 증자, 감자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송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가 일정 부분 외자의 반출을 금지하는 것들은 단기의 투기성 자본의 유출을 막는 것이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중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에서의 합법적인 영업수익의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9일 중국 외환관리국이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1. **세관의 기업신용관리제도 건설**

외상투자기업의 편의와 관리를 위해서 세관업무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도의 정비

최근에 중국의 세관총서는 세관기업신용관리잠행방법(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 세관인정기업표준(海关认证企业标准)등의 일련의 제도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입 신용 관리체계를 법치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관은 정보화 관리 건설에 역점을 두어 세관기업 수출입 신용관리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국 세관기업 수출입 신용 정보 공시 플랫폼(中国海关企业进出口信用信息公示平台)과 중국 세관 관리기업 합작 플랫폼(中国海关关企合作平台)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관기업의 신용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둘째, 기업의 신용에 따른 차별화된 감독 관리

신용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출입 검사율을 낮추는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재, 세관의 고급인정기업의 항만의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비율은 일반 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동시에 세관의 관리인력 등의 자원은 주로 신용이 좋지 않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통관검사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제 감독관리와 현장 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부처간 연합 감독 관리

세관은 기업의 수출입신용관리를 국가사회신용 체계건설에 포함시켜 세관과 국가 발개위, 인민은행, 상무부 등의 40개 부서는 세관 고급인정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모두 49항목에 달하는 편의조치를 취하고 정책적인 프리미엄을 충분히 부여할 예정입니다. 세관은 세관신용관리제도와 상업등기제도를 결합시켜 기업의 등록 등기 방면에서도 일련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통관업무 방면에서 신용이 불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합니다.

넷째. 국제합작의 추진

중국 세관은 다른 국가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经认证的经营者,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상호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중국에서 신용 평가를 잘 받은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싱가폴, 한국, 홍콩, 유럽연합 등 31개 국가 내지 지역과 AEO국제상호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 향후 외국투자법이 시행되면 그간의 3자기업법 체계가 회사법 체계로 바뀌고 이러한 구조 변화에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회사의 지배구조 등 많은 부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즉, 3자기업법 하에서는 중외합자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었지만 회사법 하에서는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3. 중국은 기존의 낮은 생산요소비용이라는 장점이 점점 없어지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기조, 자국제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도 미국 본토에서의 투자, 일자리 창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앞으로 외자유치방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경쟁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4. 그러나 중국은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6.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의 국내시장 규모도 이제 1조 달러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개월 동안 중국의 사회 소비재소매 총액은 10.4%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외상투자의 큰 유인이 될 것입니다.
5. 중국의 외자유치 확대 정책에 비추어 보면 향후 중국 시장에 전망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에서 현대농업, 선진제조, 하이테크 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소재 개발 분야 등으로 전망됩니다.
6. 중국말에 船小好调头, 즉 배가 작으면 방향을 돌리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외부 환경에 너무 휘둘리기 보다는 내부에 눈을 돌려 불필요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체질개선을 통해 향후 중국의 시장상황에 융통성 있게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CONTACT**

[**변웅재 변호사**](https://www.yulchon.com/KOR/professional/view.asp?CD=1995&EMP_NO=16149&&searchGroup=A&searchVal=변웅재&CM=)  02-528-5797 [ujbyun@yulchon.com](mailto:wjung@yulchon.com)

[**허욱 변호사**](https://www.yulchon.com/KOR/professional/view.asp?EMP_NO=16299) +86-185-0085-2518 whuh@yulchon.com

[**태충남 중국 변호사**](https://www.yulchon.com/KOR/professional/view.asp?EMP_NO=16050) +86-10-8567-0828 taizhn@yulchon.com

[**백혜 중국 변호사**](https://www.yulchon.com/KOR/professional/view.asp?EMP_NO=16370) 02-528-5072 hbai@yulchon.com